

미분양 주택 확인서

(부동산투자자이민제 대상 미분양주택)

시행사 (사업주체)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전화번호
	소재지	
미분양 확인 대상 주택	건물명 또는 단지명	동 및 호수
	소재지	
	해당 주택 시공사명	
	해당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차 : , 2차 : , 3차 :	

위 시행사는 상기 미분양 확인 대상 주택이 20 년 월 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(미분양 주택)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시행사 대표 (인)

○○○출입국관리사무소장(출장소장) 귀하

유의사항

- 위 확인서는 반드시 대상주택의 시행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.
- 위 시행사 대표 날인은 대상주택 분양계약서에 날인하는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본 확인서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